

임예진 관세법(2024년 대비) 개정사항 (3)

- 관세법 시행규칙 2024. 3. 22. 개정 [시행 2024. 3. 22.]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2024. 3. 22. 개정 [시행 2024. 3. 22.]

* 공지사항

관세법 시행규칙,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관세사 시험은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024년 3월 22일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중에서 2024년 7월 1일 시행, 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개정된 규정은 본 개정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p.109 : 규칙 제9조의3 수정

◆ **[규칙 제9조의3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 말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연 1천분의 29	연 1천분의 35

p.297 : 규칙 제9조의3 수정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규칙 제9조의3]

영 제56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 말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연 1천분의 29	연 1천분의 35

*** 공지사항**

시행규칙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이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개정되면서, 보정이자율, 과다환급관세 징수시 가산금 이율, 관세환급가산금 이율이 모두 연 1천분의 35로 개정됨.

다만,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연 1천분의 12는 개정되지 않았음.

p.148 : 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 수정

제2항.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의 기준 [영 제60조 제2항 관련 시행규칙]

영 제60조 제2항 ③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 ①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 ② 덤핑물품 수입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특정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 ㉡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제3항.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 [영 제60조 제2항 관련 시행규칙]

영 제60조 제2항 ④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 생산량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②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p.156~158 : 규칙 제17조 제2항, 제3항 수정 (영 제65조 제3항과 함께 수정필요)

* 개정된 영 제65조 제2항과 기존의 규칙 제17조 제1항은 관련된 규정임. (하기 참조)

제2항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영 제60조 제1항 ②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다음의 자에 대해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영 제64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① 영 제60조 제1항 ③에 따른 조사대상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공급자”라 한다)
- ② 조사대상공급자와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공급자

영 제65조 제2항 관련 시행규칙·시행령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규칙 제17조 제1항]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①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text{덤핑률} = \frac{\text{조정된 정상가격} - \text{조정된 덤핑가격}}{\text{과세가격}} \times 100$$

② 덤핑방지관세를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영 제65조 제7항에 따른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기준수입가격의 결정 [영 제65조 제7항]

기준수입가격은 영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제3항 조사대상 미선정 공급자 및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법 제51조에 따라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 ①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 ② ①에도 불구하고 제64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공급자와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영 제65조 제3항 관련 시행규칙

가중평균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 [규칙 제17조 제2항]

영 제65조 제3항 ①에 따라 가중평균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핑차액이 100분의 2 미만인 공급자
- ② 영 제64조 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차액 등을 산정한 공급자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 [규칙 제17조 제3항]

기획재정부장은 영 제65조 제3항 ②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하여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6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급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p.184 : 규칙 제29조 제2항, 제3항 수정 (영 제79조 제2항과 함께 수정필요)

* 개정된 영 제79조 제1항과 기존의 규칙 제29조 제1항은 관련된 규정임. (하기 참조)

제1항 상계관세 부과방법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는 영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다음의 자에 대해서는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수출자에 대하여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① 영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사대상 수출자(이하 “조사대상수출자”라 한다)
- ② 조사대상수출자와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수출자

영 제79조 제1항 관련 시행규칙

상계관세 부과방법 [규칙 제29조 제1항]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

$$\text{보조금률} = \frac{\text{보조금 등의 금액}}{\text{과세가격}} \times 100$$

제2항 조사대상 미선정 수출자 및 신규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방법

법 제57조에 따라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수출국의 신규 수출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수출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 ① 조사대상수출자에게 적용되는 상계관세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 ② ①에도 불구하고 영 제78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수출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수출자와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영 제79조 제2항 관련 시행규칙

가중평균 상계관세율 [규칙 제29조 제2항]

영 제79조 제2항 ①에 따라 가중평균 상계관세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등을 받는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등의 금액이 과세가격의 100분의 1 미만인 수출자를 상계관세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규수출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의 조사 [규칙 제29조 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79조 제2항 ②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하여 영 제75조에 따른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7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출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p.489 : 규칙 제68조의2 제3항 수정

제3항. 특허수수료의 감경

법 제176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전	개정 후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p.534: 규칙 제73조의3 신설 (신설된 법 제220조의2 관련 시행규칙)

법 제220조의2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법 제213조 제1항에 따라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법 제220조의2 관련 시행규칙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주체와 물품 [규칙 제73조의3]

제1항.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주체

법 제220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선박회사를 말한다.

- ① 제2항 ①에 따른 물품의 경우: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회사
- ② 제2항 ②에 따른 물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회사
 - ㉠ 「해운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회사
 - ㉡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외국국적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

제2항.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물품

법 제220조의2에서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 ① 환적컨테이너
- ② 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외국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p.585 : 규칙 제77조의6 제1항 ④ 추가신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 [규칙 제77조의6 제1항]

영 제246조 제1항 ⑦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이란 다음을 말한다.

- ① 물품의 모델 및 중량
- ② 품목분류표의 품목 번호
- ③ 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서류의 명칭
- ④ 수출입 법령에 따라 통관이 일시적으로 제한·금지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보에 공고하는 정보

p.599 : 규칙 제78조 삭제 (법 제247조 제3항과 함께 삭제)

법 제247조 제3항 관련 시행규칙

검사수수료 [규칙 제78조]

제1항. 검사수수료 계산식

법 제247조 제3항에 따라 내는 검사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기본수수료(시간당 기본수수료 2천원 × 해당 검사에 걸리는 시간)] + 실비상당액(세관과 검사장 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제2항. 1건의 계산

제1항의 경우 수입화주와 검사의 시기 및 장소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1건으로 하여 기본수수료를 계산한다.

제3항. 납부사실 증명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수출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항. 일괄고지

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고지하는 때에는 검사수수료를 일괄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p.735 : 규칙 제2조 제1항 ② 수정

② 해외에서 투자·건설·용역·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개정 전	개정 후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

p.757 : 규칙 제12조 수정

영 제16조 제2항 관련 시행규칙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규칙 제12조]

영 제16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①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상의 발급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 제1항 제2호(원상태수출)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받은 환급 실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억원 이하일 것
- ②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 제1항 제2호(원상태수출)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환급을 신청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8억원 이하일 것

개정 전	개정 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상의 발급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 제1항 제2호(원상태수출)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받은 환급실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억원 이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 제1항 제2호(원상태수출)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환급을 신청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8억원 이하